

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X교통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0. 9. 24. 05:40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으로 후진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과 염좌를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0. 11. 3.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전부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기 위하여 저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을 방문하여 사건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상담일지

저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사건팀은 2011. 9. 27. 사건장소에서 의뢰인을 방문상담하였습니다. 저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사건팀은 사건장소를 사진으로 저장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에게 저희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소장

소장

원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REDACTED]

이사장

[REDACTED]

송달장소 :

[REDACTED]

요양급여불송인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1.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송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관철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REDACTED]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¹⁴⁷⁴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0. 9. 24. 05:40경 출근하여 사업장내 주차장에서 후진주차를 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이를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그 자리에서 119구급차로 제주한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바,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0. 11. 9. 재해경위를 볼 때 차량배치를 받기 전에 발생한 재해이고 사업장에서 설치한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함)을 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련법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배관리하**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권하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직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호의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운차 또는 운차편이 관리직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위 범규의 취지 및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제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거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체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자주 기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연관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2) 대법원은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200554459

(3) 대법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은 설령 재해경위가 차량배치를 받기 전에 발생한 재해이고 사업장에서 설치한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차량 배치를 사전에 통보받은 상태에서 새벽 5:40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주차장에 도착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출근의 방법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이므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 | | |
|------------------|----------------|
| 1. 강제1호증의 1 내지 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결정통지서 |
|------------------|----------------|

첨부서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의 사본 | 각 1통 |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통 |
| 1. 압류서 | 1통 |
|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각 1통 |
| 1. 부본 | 1통 |

2011. 2.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주지방법원 귀중

4. 원심판결



제 주 지 방 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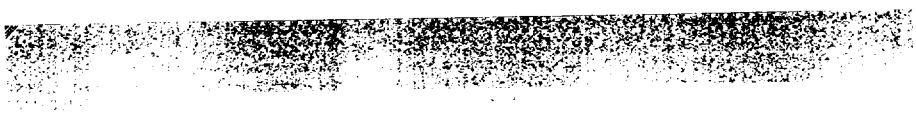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86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Redacted]
 송달장소 [Redacted]
 소송수행자 [Redacted]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자번호 있는 경우, 각 가자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REDACTE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0. 9. 24. 05:40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후진 주차를 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원고가 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 방문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차량배차를 사전에 통보받은 상태에서 출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출근방법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령·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37

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 이 사건 사고가 05:40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배차시간은 06:20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나.항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① 근로자가 ②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또는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기보다 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업무수행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 이 사건 사고가 05:40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배차시간은 06:20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다항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고 할 수 있고,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바목)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나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달리기,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관리·사용권은 원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통근과정 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

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_____

 판사 [Redacted] _____

 판사 [Redacted] _____

5. 준비서면

사 건 YYYY누YY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OOO
피 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준 비 서 면

2011. 10. 10.

위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YYYYYY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OOO
 피 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원심판결의 입장 및 항소요지

가. 원심판결의 입장

(1) 원심법원은 ① 원고 스스로가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사 05:40경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①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2) 원고는 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②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회사에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항소요지

이 사건 사고는 ①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또한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③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고는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 관련판례의 입장

서울행정법원 2006. 3. 22. 선고 2006구합7607 판결에서 “원고가 운행한 도로의 상태나 차량 운전석의 기능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재해당시까지 13년이 넘도록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400km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잦은 요철구간을 지남으로써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허리에 마지막의 결정적 충격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충격 후 바로 병원에서 요부 MRI 촬영 및 물리치료, 약물투약 등을 받았으며, 제 4-5요추 추간반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60세에 가까운 원고의 나이에 따라 요추간반과 요추강에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요추간반탈출증과 요추강협착증으로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원심법원은 이 사고가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① 아침 6:00경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10:00경까지 하루의 15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② 하루 운행구간이 하루에 600km 이상입니다. ③ 특히 요즘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있어 버스운전기사들의 허리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사람의 몸은 보통 새벽에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근속기간이 17년에 이르는데, 그동안의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 누적된 피로가 새벽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은 위 판결의 법리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심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05:40경 사업장 안에 위치한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의 회사 사업장내 주차장 주변으로 제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오전 05:40경에는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회사 사업장내 주차장에는 조명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갑제2호증의1내지5) 원고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도 원고의 차 후방에 오토바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X교통은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와 동시간대에 22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되어지 위해서, 원고를 제외하더라도 약 20여명의 운전기사들이 출근 차량을 주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고 시간대의 출근차량을 비롯하여, 이 사고 전, 후 시간대의 출근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충분한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출근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장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 관련판례의 입장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대법원2007.9.28.선고 2005두12572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에서도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대하여 승용차의 관리·이용권한이나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삼구에프에스가 별도로 명시하여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었음은 인정되나,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삼구에프에스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 판결의 취지

위 판결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차량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업무특성, 출퇴근의 형태와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여 통근재해의 범위를 확대시킨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검토

원심법원은 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②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출근시

간이 다소 이른 05:40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회사에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 역시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의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 출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행수단 말고는 출근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자택인 외도1동에서 배차자인 용담2동까지는 그 거리가 10km 가까이 되어 도보나 자전거로는 출근할 수 없어 승용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차량으로밖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②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해 인원은 X교통의 노선은 11개이고 첫차로 2대씩 운행하는 점에 비추어볼때, 출근자 20여명과 이와 반대로 퇴근할 때 역시 돌아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퇴근자 20여명을 포함여 총 40여명입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의 크기는 대략 3~4평정도로 40여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운전기사들은 몇 년째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는 버스 출발지가 아니라 차고지입니다. 따라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안전점검을 받고 차고지에서 기점으로 차량배정시간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차량안전점검을 받는데 10분이 걸리고 차고지에서 기점까지 거리가 5km입니다. 원고의 사건 당일배차시간이 06:20이고 이를 위해 05:40 출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출근 수단이 자신의 차량밖에 없는 점, 숙박시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점, 첫차배차를 위해 40분전에 출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본다면 원고의 출근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업무행위로 인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회사 사업장내 주차장 주변으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두웠지만 원고의 회사는 사업장내 주차장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차관인 등을 두지 않았으므로 사업주는 주차장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출근 수단이 자신의 차량밖에 없는 점, 숙박시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점, 첫차배차를 위해 40분전에 출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본다면, 원고의 출근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강제2호증의 1내지5 사건현장사진

2011. 10. 10.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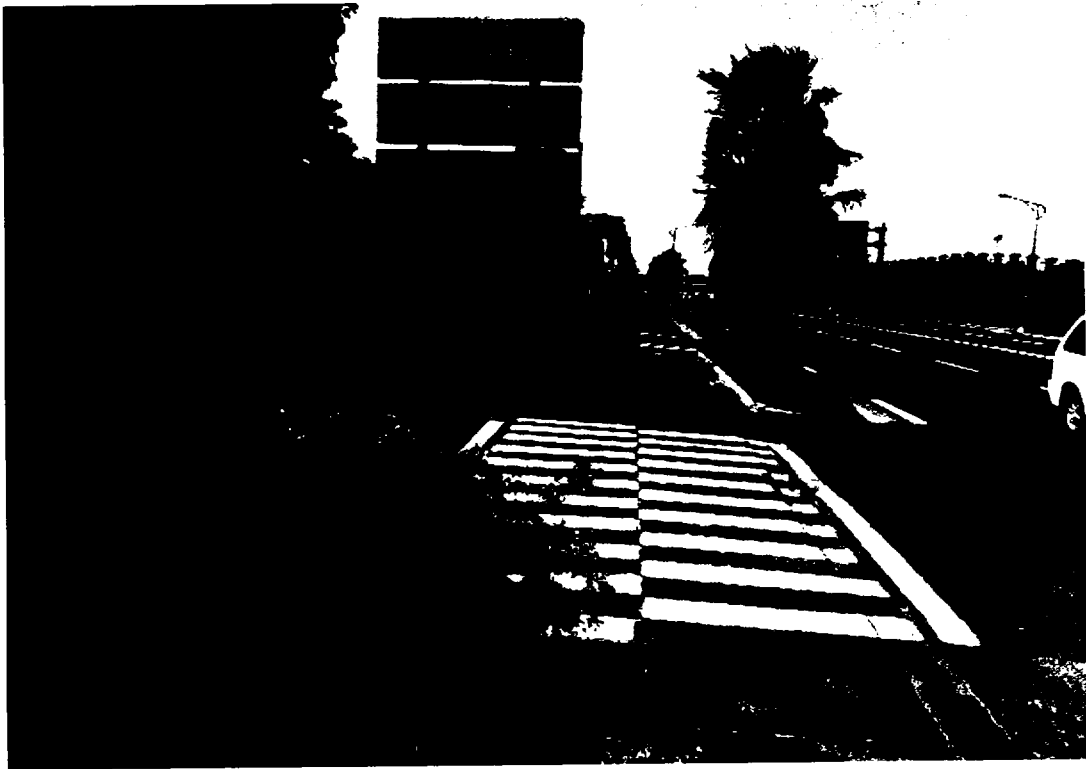
담당변호사 △ △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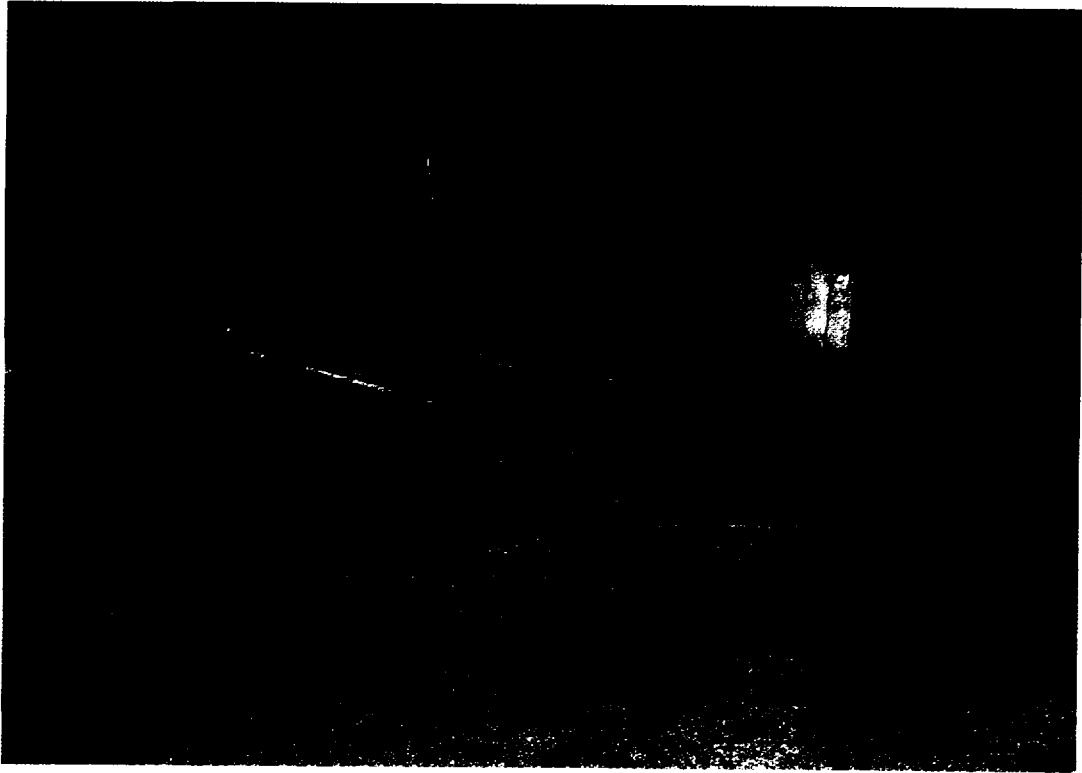


1. 강제2호증의 1

- 이 사건 사고 장소(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뒤쪽으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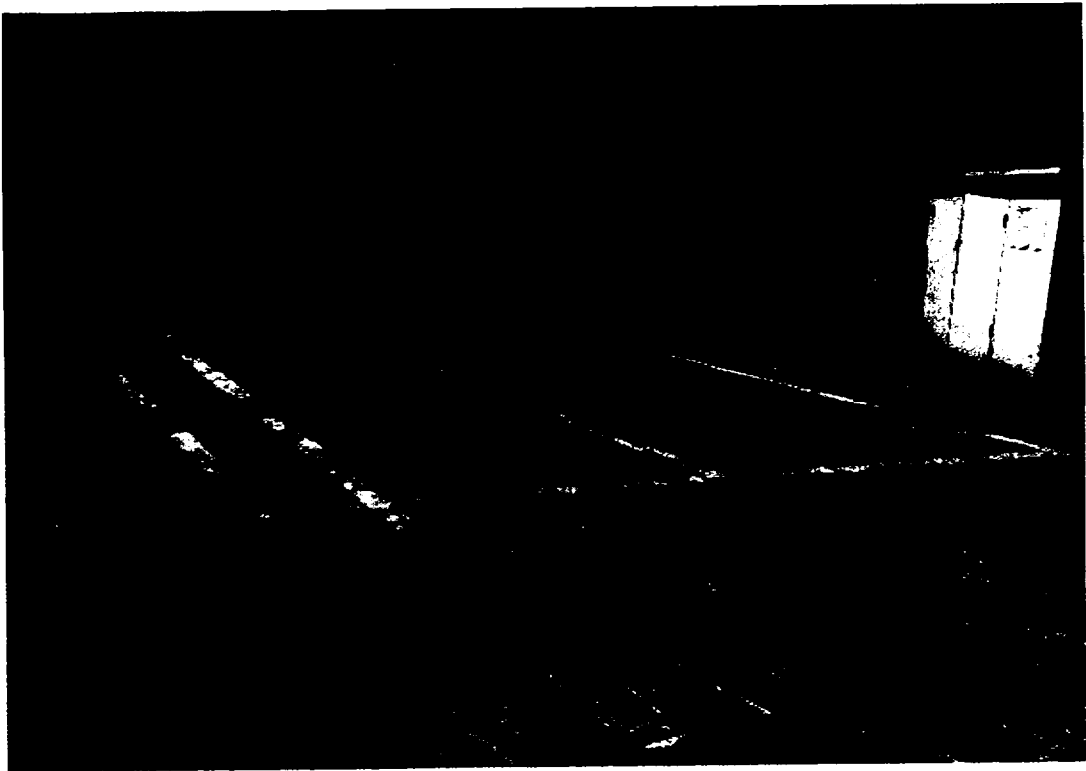


2. 강제2호증의 2
 - 사업장내 주차장(차고지) 입구.



3. 강제2호증의 3

- 멀리서 촬영한 이 사건 사고 장소(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4. 강제2호증의 4

- 가까이서 촬영한 이 사건 사고 장소(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5. 강제2호증의 5

-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촬영한 전망.

6. 앞으로의 활동방향

저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사건팀 2011. 11. 11.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저희 팀은 상대방의 답변서를 반박하겠습니다. 또한 원고와 같은 시간대에 출근했던 회사 동료 및 오토바이의 소유주를 증인신청하고, 차고지와 원고의 거주지와의 거리, 차고지와 기점의 거리, 새벽 5:40경 밝기 정도 등, 관련 증거들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